KOSHA GUIDE M -111 - 2015

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

2015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용우

- o 제·개정 경과
  - 1997년 3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 - 1997년 4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5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2년 4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15년11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ASME SEC. IX: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(2013)
- ASME SEC. VIII: Rules for Construction of Pressure vessels (2013)
- KS B 6750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(2012)
- KS B 6751 압력용기 용접일반 (2012)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2장 제4절(화학설비·압력용기 등)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2 장 제4절 (화학설비·압력용기 등) 의 규정에 따라 압력용기를 안전하게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20MPa 이하로 설계된 탑조류(Tower 또는 Column), 용기(Vessel), 열교환기(Heat exchanger) 등의 압력용기 용접설계에 관하여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압력용기(Pressure vessel)"라 함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서 일정한 유체의 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를 말한다.
- (나) 안전율(Safety factor)"이라 함은 용착부 재료의 강도(인장강도 또는 전단강도) 를 허용응력으로 나눈값을 말한다.
- (다) "허용응력(Allowable stress)"이라 함은 용접이음부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범위이내에서 허용되는 최대응력을 말한다.
- (라) "방사선투과시험(Radiographic test)"이라 함은 방사선을 사용하여 용접부의 내부결함을 조사하는 비파괴시험을 말한다.

M - 111 - 2015

- (마) "열응력(Thermal stress)"이라 함은 용접시에 반복되는 열에 의해서 모재 및 용착금속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을 말한다.
- (바) "피로(Fatigue)"라 함은 재료에 반복응력이 가해질 때, 재료의 강도가 저하하는 현상을 말한다.
- (사) "이음효율(Joint efficiency)"이라 함은 용접이음부의 건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의 정도에 따라 모재 두께에 대한 이음부의 두께 효율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 규칙,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용접이음 설계 시 고려사항

용접 압력용기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4.1 일반사항

- (1) 가능한 아래보기 용접이 되도록 한다.
- (2) 용접이음형상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그 특성을 잘 이해하여 선택한다.
- (3) 용접하기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.
- (4) 용접이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.
- (5)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그루브의 치수와 형상은 완전한 용융과 완전 용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(6) 결함이 생기기 쉬운 용접이음은 피해야 하며 필릿용접 이음은 노즐, 보강재, 기타 일부에 적용 하다.

M - 111 - 2015

(7) 압력용기 제작자는 용접에 앞서 용접이음마다 용접시공 절차서를 작성하고 그절차서에 의한 용접방법 및 조건에 따라 용접이음 설계 및 용접시공 방법의확인시험을 하여야 한다.

## 4.2 안전율

- (1) 모재 및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(항복점, 인장강도 및 연신, 압축 및 충격치)
- (2) 시공조건(용접공의 기능정도, 용접방법, 용접자세, 이음의 종류와 형상, 작업장소, 용접 후 열처리관계, 비파괴시험의 유무 등)의 적부
- (3) 사용조건(사용온도, 치사적 물질 및 부식성 등)
- (4) 하중의 종류(정하중, 동하중, 진동하중)

#### 4.3 사용의 제한

다음의 용접 이음부는 전 길이에 대한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1) 치사적 물질을 포함하는 압력용기의 동체 및 경판의 모든 맞대기 용접부 ("치사적 물질"이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별표11의2 (유해인자 분류기준)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을 말한다)
- (2) 용접 이음부에서 공칭두께가 38mm를 초과하는 압력용기의 모든 맞대기 용접부
- (3) 설계압력이 350kPa을 초과하는 비직화식 증기보일러 동체 및 경판의 모든 맞대기 용접부
- (4) 위 (1) 또는 (3)에 따라 전 길이 방사선 투과시험이 요구되는, 압력용기 부분 또는 경판에 부착되는 노즐 및 연결실 등에 있는 모든 맞대기 용접부
- (5) 용접이음부 및 부품이 <표1 (a)>에서 허용하는 이음 효율에 기초하여 설계된 압력용기 용접부

M - 111 - 2015

### 5. 용접설계 및 제작

#### 5.1 용접부의 설계

- (1) 아크 용접 및 가스용접법에 허용되는 용접 이음부 형식과 각 형식에 허용되는 판의 제한 두께는 <표 1〉에 따른다.
- (2) 연결해야 할 가장자리 치수와 모양은 완전 용융 및 완전 용입될 수 있는 치수와 모양 이어야 한다.
- (3) 용접부 두께 차이가 얇은 단면 두께의 ¼ 또는 3mm 중에서 작은 값을 초과하는 단면들 사이의 이음부에는 접합단면과 인접표면 사이 오프셋(offset)길이의 3배이상인 두께 변화부(tapered transition)가 있어야 한다.
- (4) 두 단 (course) 이상으로 제조하는 경우 인접단의 길이방향 용접 이음부 중심을 엇갈리게 설치하거나, 두꺼운 판 두께의 5배 이상 분리시켜야 한다.
- (5) 겹침 이음부의 경우, 표면 겹침부는 안쪽 판 두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.
- (6) 응력 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릿 용접부를 추가하여야 한다.
- (7) 용접부에 있는 구멍 또는 인접 구멍
  - (가) 보강 요건을 충족시키는 임의 형식의 구멍이 용접 이음부에 있어도 된다.
  - (나) 동체나 경판에 단독으로 있는 개구부로서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범주 B 또는 C의 맞대기 용접 이음부에 있어도 되지만 구멍(길이 중간부에 중심이 있는) 지름의 3배 길이에 대해 방사선투과 시험을 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- (8) 압력용기 동체(Shell) 또는 경판(Head)에 부착되는 넥은 완전 용입 홈 용접으로 부착시켜야 한다.

#### 5.2 이음효율(Joint efficiency)

KOSHA GUIDE M - 111 - 20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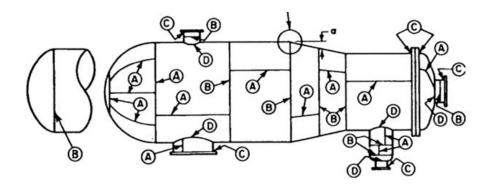
아크 용접 및 가스 용접법에 허용되는 용접 이음부 형식과 각 형식에 허용되는 판의 제한두께와 방사선투과시험 정도에 따른 용접이음의 효율은 <표 1>과 같다.

<표 1> 아크 용접 및 가스 용접 이음부에 대한 최대 허용 이음효율

| 형식  |  | 제한 조건   | 이음부           | 방사선 투과 시험 정도 |          |      |
|-----|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번호  | 이음부 설명   |   |               | (a)          | (p)      | (c)  |
| 민오  |  |   | 범주<br>        | 전 길이         | 부분       | 미실시  |
| (1) | 양면 용접 또는 다른 방법으로 완성한 맞대기 이음부. 그자리에 남겨두는 금속 용접 받침대를 사용하는 용접부는 제외한다. | 없음.   | A, B,<br>C, D | 1.00         | 0.85     | 0.70 |
|     | 위 (1)에 포함된<br>용접부 이외의 용  | (a) 아래 (b) 외에는 없다.  | A, B,<br>C, D | 0.90         | 0.80     | 0.65 |
| (2) | 접 받침대를 사용<br>하는 단면 용접 맞<br>대기 이음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b) 한 개 판의 오프셋이<br>있는 원주 방향 맞대기<br>이음부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А, В, С       | 0.90         | 0.80     | 0.65 |
| (3) | 용접 받침대를<br>사용하지 않는<br>단면 용접 맞대기<br>이음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께 16mm 이하, 바깥지름<br>600mm 이하의 원주 방향<br>맞대기 이음부에 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| А, В, С       | 해당<br>없음     | 해당<br>없음 | 0.60 |
| (4) | (a) 두께 10mm 이하 길이양면 완전 필릿방향 이음부겹침 이음부(b) 두께 16mm 이하 원주방향 이음부       | A   | 해당<br>없음      | 해당<br>없음     | 0.55     |      |
|     |  |   | B 및 C         | 해당<br>없음     | 해당<br>없음 | 0.55 |
| (5) | 플러그 용접부가<br>있는 단면 완전<br>필릿 겹침 이음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a) 바깥지름 600mm를 초<br>과 하지 않는 경판을<br>두께 13mm이하의 동체<br>에 부착 시키기 위한<br>원주 방향 이음부 | В             | 해당<br>없음     | 해당<br>없음 | 0.50 |
|     |  | (b) 플러그 용접부 중심에<br>서 판 가장자리까지의<br>거리가 그 플러그용<br>구멍 지름의 1½배 이                  | С             | 해당<br>없음     | 해당<br>없음 | 0.50 |

| IZOC           | IIA CHIDD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KOS            | HA GUIDE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M - 111 - 2015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인 경우, 공칭 두께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㎜이하인 재킷을 동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에부착시키기 위한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주 방향 이음부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a) 동체 내부에 필릿 용 |      | 해당<br>없음 | 해당 없음    | 0.45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부만 있으며, 요구     | А, В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두께 16mm 이하인 동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플러그 용접부가<br>없는 단면 완전<br>필릿 겹침 용접부 | 체에 볼록면이 압력을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받는 경판을 부착시킬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(6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b) 경판 플랜지의 바깥쪽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에만 필릿 용접부가      | А, В | 해당<br>없음 | 해당<br>없음 | 0.45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있으며, 안지름 600mm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하 및 요구두께 6mm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하인 동체에 어느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쪽이 압력을 받는 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경판을 부착시킬 경우     |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

<표 2> 범주 A, B, C 및 D 용접 이음부의 대표적 예시



# 5.3 용접 후 열처리

(1) 용접 구조로 제작하는 용기는 용착금속이나 열영향부의 결함을 방지하고 잔류 응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예열, 후열처리 또는 응력제거를 한다. 적용하는 기준은 사용 재료의 종류, 용접방법 및 관련규격에 따라 결정한다. 용접 후 열처리 대상 은 <표 2>와 같다.

#### <표 2> 탄소강 및 저합금강 용접 후 열처리 요건

| 재 료  | 재 료 두 께(mm)  |  |
|--|--|--|
| P-No. 1, Gr. No. 1,2,3<br>P-No. 10C, Gr. No. 1   | <ul> <li>- 공칭두께 38㎜를 초과하는 재료</li> <li>- 용접하는 동안 최저 95℃로 예열하지 않은</li> <li>공칭두께 32㎜ 초과 38㎜ 이하인 재료</li> </ul> |  |
| P-No. 3 Gr. No. 1,2,3<br>P-No. 9A, 9B, Gr. No. 1<br>P-No. 10A, Gr. No. 1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P-No. 3, Gr. No. 3 재료의 모든 두께의 재료<br>- 공칭두께 16mm를 초과하는 재료   |  |
| P-No. 4, Gr. No. 1,2<br>P-No. 5A, 5B, 5C Gr. No. 1<br>P-No. 15E, Gr. No. 1<br>P-No. 10B, Gr. No. 1 | - 원칙적으로 모든 재료  |  |

재료에 따른 예외 사항 등 기타 사항은 KS B 6750 표 6.5.9(탄소강 및 저합금강의 용접 후 열처리 요건)에 따른다.

# (2) 용접 후 열처리 요건

- (가) 용기나 부품을 노에 장입할 때 노의 온도는 425℃ 이하이어야 한다.
- (나) 425°C 초과 온도에서의 가열속도는 222°C/hr를 동체판 또는 경판의 최대 금속 두께(25mm 기준)로 나눈 값 이하이어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222°C/hr 이하이어야 한다. 가열하는 동안 용기의 가열부위에서 길이 간격 4.6m내에 139°C를 초과하는 온도편차가 없어야 한다.
- (다) 가열 유지시간동안 용기의 가열부위 전체에 대한 최고 및 최저온도 차는 83℃ 이하이어야 한다.
- (라) 425°C 초과 온도에서의 냉각은 280°C/hr를 동체판 또는 경판의 최대 금속두께  $(25 \text{mm} \ 7)$ 로 나눈 값 이하의 속도로 밀폐된 노 또는 냉각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282°C/hr 이하이어야 한다. 425°C부터는 정체된 대기에서 냉각시켜도 된다.

# KOSHA GUIDE M - 111 - 2015

### 5.4 제작

- (1) 이음부의 모양, 치수는 용접시공 절차서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.
- (2) 모재의 온도가 -20℃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용접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용접해야 할 표면은 깨끗해야 하고 스케일, 녹, 기름, 유지분, 슬래그, 산화물 및 기타 유해한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.
- (4) 맞대기 용접을 해야 할 가장자리에서 최대 오프셋(offset)이 해당 용접 이음부 범주에 대한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재를 정열하여야 한다.

<표 3> 맞대기 용접에서 엇갈림 오차의 허용값

| 부재 두께       | 이음부 범주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            | mm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mm          | A                   | B, C 및 D         |  |  |  |
| 13 이하       | 1/4 t               | 1/4 t            |  |  |  |
| 13 초과 19 이하 | 3                   | 1/4 t            |  |  |  |
| 19 초과 38 이하 | 3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|  |  |  |
| 38 초과 51 이하 | 3                   | ½ t              |  |  |  |
| 51 초과       | 1/16 t 또는 10 중 작은 값 | ⅓ t 또는 19 중 작은 값 |  |  |  |

(5) 맞대기 용접 이음부는 완전 용입 및 완전 용융 용접 이어야 한다. 비파괴 시험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용접부 표면에서 거친 파형(ripple), 흠, 겹침부 및 날카로운 돌기와 골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, 각 면의 용접 덧살은 모재로 부터 매끄럽게 높아져야 하고 그 높이는 다음 <표 4>의 값 이하가 되어야 한다.

<표 4>용접 덧살의 최대 허용 두께

|        |        | 최대 용접 덧살     |        |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|
| 재료의 공칭 | l 두께   | mm           |        |  |
| mm     |        | 범주 B 및 C 맞대기 | 기타 용접부 |  |
|        |        | 용접부          | 기억 중심포 |  |
| 2.4 미만 |        | 2.4          | 0.8    |  |
| 2.4 이상 | 4.8 이하 | 3.2          | 1.6    |  |
| 4.8 초과 | 13 이하  | 4.0          | 2.4    |  |
| 13 초과  | 25 이하  | 4.8          | 2.4    |  |
| 25 초과  | 51 이하  | 5            | 3.2    |  |
| 61 초과  | 76 이하  | 6            | 4      |  |
| 76 초과  | 102 이하 | 6            | 6      |  |
| 102 초과 | 127 이하 | 6            | 6      |  |
| 127 초  | 라      | 8            | 8      |  |

- (6) 필릿 용접을 실시할 경우, 해당 용접부 루트(Root)에서 용접 금속이 모재 속으로 적절하게 용입되도록 용착시켜야 한다.
- (7) 양면 용접 이음부의 경우, 용접 금속이 처음 용착된 기초부에 건전한 금속이 나타나도록 반대쪽을 용접하기 전에 뒷면을 치핑, 연삭 또는 용융제거 하여야 한다.
- (8) 육안검사, 수압시험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출한 균열, 핀홀(pinhole), 융합 불량과 같은 결함은 기계적인 방법 또는 열 가우징 방법으로 제거 한 후에 그이음부를 재용접하여야 한다.

#### 6. 시험 및 검사

### 6.1 용접절차 확인

승인된 용접 절차서에 따라 용접되었는지 확인하여야 제조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 시켰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
M - 111 - 2015

6.2 용접 후 열처리 작업의 확인

모든 용접 후 열처리의 정확한 실시 및 열처리 온도가 해당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.

6.3 기밀시험을 실시할 압력용기

기압시험을 실시 해야하는 압력용기의 경우, 다음 용접부의 전 길이에 대해 균열을 검출하기 위해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1) 구멍 둘레에 있는 모든 용접부
- (2) 비압력 부품을 압력 부품에 부착시키는 용접부를 포함하여, 목두께가 6㎜를 초과하는 모든 부착 용접부
- 6.4 용접이음부에 대한 방사선 투과시험
  - (1)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모든 용접 이음부
  - (2) <표 1>의 b)열(부분 방사선 투과시험)에서 용접이음효율을 선택한 압력용기 용접부는 15m마다 또는 그 일부에 대해 한 번의 부분 시험(Spot Test)을 실시하여야 한다.